성적학대 보호명령의 변경
지시사항

절차는 각 법원마다 다양합니다. 접수 지시사항에 관해 귀하의 지방 법원에 문의하시오.

성적학대 보호명령을 변경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개인은 답변인이 심리를 신청해야 하는 30 일 기한 후 언제든지 이런 변경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이 만기되지 않았거나 판사에 의해 종결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성적학대 보호명령의 변경	
	제약사항이 *완화*되기를 원하는 경우:	제약사항이 *강화* 되기를 원하는 경우:
귀하가 신청인인 경우:	**사용 양식:** 2 번 패킷에 있는 "Petitioner's Motion and Declaration for Less restrictive Terms" 와 "Notice to Respondent/Request for Hearing for Less Restrictive Terms "	**사용 양식:** 2 번 패킷에 있는 "Motion, Declaration and Order to Show Cause re: Modifying Sexual Abuse Protective Order"
귀하가 답변인인 경우:	**사용 양식:** "Motion, Declaration and Order to Show Cause re: Modifying Sexual Abuse Protective Order"	**사용 양식:** "Motion, Declaration and Order to Show Cause re: Modifying Sexual Abuse Protective Order"

성적학대 보호명령에 대한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인이 제약사항의 완화를 신청할 경우 판사가 답변인의 참석이 요구되는 심리 없이 신청서에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인은 자신이 변경된 명령서를 받은 후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만일 성적학대 보호명령을 변경하는 것에 관한 신청, 진술 및 근거 제시명령 양식을 기입하면 판사는 아마 상대방 당사자가 출두하도록 하는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귀하가 서류를 제출하면 어떤 법원은 심리 날짜를 정합니다. 어떤 법원은 상대방이 서류 송달을 받고 답변하기를 기다리는 30 일 기한까지 심리 날짜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정확한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명령을 발부한 법원의 법정 서기에게 의뢰하십시오.

그 담엔 무엇을 하죠?

귀하가 서류를 제출한 후 법정 직원은 귀하에게 서류의 사본을 떠 줄 것입니다. 귀하는 해당 사본의 한 부를 인편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보안관 대리가 (오리건 주 내는 무료) 송달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송달 서비스, 또는 송달 목적지의 주 내에 사는 성인을 통해서 송달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 자신이 서류를 송달 할 수는 없습니다. 송달인은 송달 증서 완료하여 법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서류 패킷 안에는 송달 증서가 있으나 일부 송달인은 자신의 양식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지방 법원이 심리 날짜를 정했을 경우 귀하의 심리 출두가 매우 중요하며, 참석하지 않으면 판사는 귀하의 신청을 기각할 것입니다. **법원이 유효한 귀하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항상 가지고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심리가 있을 때에 법원에서 통보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서류 패킷에 "심리 후 명령" 양식이 포함 되어 있으면 그 양식을 심리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판사는 그 양식에 판사 명령을 적고 서명합니다. 만일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출두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법정 서기에게 연락하십시오. 원칙적으로 심리 일정을 잡아주지 않는 법원에 이런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신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법정 서기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응할 때까지 귀 지방 법원이 심리 날짜를 정해주지 않고, 또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지 30 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리 후 명령" 양식을 판사가 서명할 수 있도록 그 것을 제출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그 양식을 어디에 제출하는지는 법정서기가 말해줄 것입니다.

영상 회의 등의 쌍방향 전자소통 기기나 전화로 법정에 출두하려면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호사가 필요한가?

성적학대 보호명령을 변경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이 귀하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만일 답변인이 명령을 변경 또는 종료하기 위해 심리를 요청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귀하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심리 날짜를 최고 5 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판사께 여쭐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오리건 주 변호사 협회에 503.684.3763 번 또는 800.452.7636 번으로 전화하여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 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 (법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법정 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 웹사이트 www.oregonlawhelp.org 도 방문 해 보십시오.

내가 장애 편의시설이나 통역사가 필요하다면?

만일 귀하가 장애가 있어서 편의시설이 필요하거나 영어를 구사할 수 없어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빨리 그러나 적어도 심리로부터 4 일 전에는 법정에 알려야 합니다. 법정 서기에게 귀하의 장애사항, 필요한 또는 원하는 도움의 종류, 자신의 모국어 등을 알려주십시오.

중요 통보사항

비밀 유지될 수 있는 정보

귀하는 일정 정보 (“보호된 개인정보”)를 법정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그러나 해당 내용을 분리 정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개인정보"에는 소셜 번호, 생년월일, 과거 법적 성명, 운전면허 번호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귀하는 해당 보호개인정보가 기입되어야 하는 서류에 **UTCR 2.100** 법령에 의거하여 분리 제출하였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UTCR는 주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재판 규정을 뜻합니다).

관련 규정 및 양식
UTCR 2.100 –보호개인정보, 연락처 해당 안됨, 제출시 분리하기 위한 필수사항 및 절차
UTCR Form 2.100.4a – 현재 제출된 서류에서 보호개인정보를 분리 신청
UTCR Form 2.100.4b –분리 정보 양식